



정확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비로미터(baromet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재판과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법조계, 보건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시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감정 및 조정·증재를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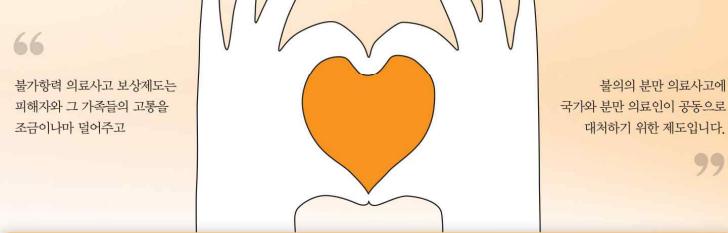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 최대 120일) 이내 신속한 조정·증재는 물론 손해배상금 대체로 보다 확실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성** 환자와 보건의료기 구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 **전문성** 법조계, 보건의료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유기적 업무수행
- **신속성** 의료분쟁 해결 혈액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 시스템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절차

01. 분만 의료사고 조정·증재 신청



04. 보상 청구



- 분만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또는 의료인 누구나 조정·증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요건과 상·폐병의 절차 참여 등 의사·법적으로 조정·증재 절차가 개설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인터넷 홈페이지·우편·팩스
- 구비서류 : 조정·증재신청서·본인증명서·주민등록증 등·조정신청 전술서 등

02. 분만 의료사고 감정



05. 심의·의결



- 의료시고감정단이 사실조사·인과관계·과실유무 등에 관한 전문적으로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합니다.
- 의료시고감정단(명) : 분야별 전문의(경·감사·변호사 등 법조인), 소비자권익 대표자(1), 학계·연구기관 교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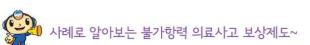
03. 보상 청구 가능 사실 고지



06. 보상금 지급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서를 토대로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위원회(명) : 판사 등 법조인(1), 의료인(1), 소비자권익 대표자(1), 학계·연구기관 교수(1)
- 의료인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절차 진행
-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조정·증재 절차 진행



사고 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제이 이용 의료기판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 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복합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저 또한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아이를 받아 보았지만 종종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위들이 발생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환자측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종종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곤 하였습니다.

이번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사망으로 복지부아이 건강을 측면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통해 많은 기간 내에 환자측의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제가 행한 의료행위가 어떤 수 없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사건에 막을 벗어나지 않지만, 사고 후의 대처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한 해결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되니 위안이 됩니다

제이 이용 환자

결혼 후 첫 아이 입신 진단을 받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입신 38주 생활에서는 태아의 과체중으로 인한 아동구개증후군이 발생되었던 제1胎의 계통개설증을 통한 분만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말을 믿고 계통개설증으로 분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만 후 건강한 상태였던 아이가 출생 하루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제 아이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의료진이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명백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제를 이용하게 되었고, 아이의 사망원인이 '신생아 저속성 폐쇄액고혈압증'이라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해 보상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만 짧은 시간에 제 아이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었고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의료인에 대한 원망도 점차 줄어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